펀드 변경 대비표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1. 대상펀드: 한국밸류 10년투자 배당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 변경시행일: 2020.01.21

3. 주요 변경 내용:
-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표준편차: 3.45% → 3.47%)
- 운용전문인력변경(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 회사 자본금변동 반영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 시행에 따른 정정

4. 변경대비표

1)일괄신고서

항 목	정정 전	정정 후
<간이투자설명서> [요약정보]	투자비용	투자비용

정정 전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0.50%이내	0.918%	0.50%	0.910%	144	242	344	560	1,18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없음	1.318%	0.90%	1.190%	136	277	423	731	1,605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25%이내	0.668%	0.25%	0.670%	94	166	241	401	86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0.868%	0.45%	0.730%	90	183	281	487	1,083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A형과 종류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2개월

정정 후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0.50%이내	0.918%	0.50%	0.900%	144	242	344	560	1,18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없음	1.318%	0.90%	1.180%	136	277	423	731	1,605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25%이내	0.668%	0.25%	0.660%	94	166	241	401	86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0.868%	0.45%	0.710%	90	183	281	487	1,083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A형과 종류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 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2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2개월

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22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상기 펀드의 동종유형 총보수 기준일은 2019/01/31 입니다).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종류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7.12.26 ~ 18.12.25	16.12.26 ~ 18.12.25	15.12.26 ~ 18.12.25	-	14.12.24 ~ 18.12.25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4.34	-0.15	0.71		2.12
비교지수	-3.17	1.41	1.56		1.72
수익률변동성	4.11	3.54	3.45		3.36

(주1) 비교지수 = [KOSPI*27%]+[CD금리*73%]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 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5)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채권혼합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이채원	1964	책임 (대표이사)	27개	32,272억 원	-3.34%	1.03%	-3.34%	1.03%	22년 9개월
국대운	1985	책임 (차장)	2개	1,861억 원	-3.97%	0.59%			4년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

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22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종류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9.01.03 ~ 20.01.02	18.01.03 ~ 20.01.02	17.01.03 ~ 20.01.02	15.01.03 ~ 20.01.02	14.12.24 ~ 20.01.02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5.90	0.25	1.59	2.78	2.85
비교지수	3.58	-0.36	1.98	2.00	1.96
수익률변동성	3.31	3.80	3.47	3.39	3.39

(주1) 비교지수 = [KOSPI*27%]+[CD금리*73%]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 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5)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채권혼합형, 단위: %)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이채원	1964	책임 (대표이사)	28	30,690	3.69	-0.52	3.69	-0.52	23년9개월
국대운	1985	책임 (차장)	3	1,680	7.62	1.05			6년
김운실	1982	책임 (차장)	2	619	-	-			6년10개월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

	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추가)	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수는 공모·사모펀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효력발생일 2019년 11월 15일	**효력발생일** 2020년 01월 21일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14.12	최초 신고
2015.06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6.05	종류 C-Pe 신설
2016.07	위험등급 분류체계 변경 반영
2017.04	종류 A-G, C-G 신설
2017.1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8.10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환매수수료 폐지
2019.08	종류 C-W 가입자격요건 변경

5. 운용전문인력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채권혼합형)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채원	1964	책임(대표이사)	27개	32,272억원	-3.34%	1.03%	-3.34%	1.03%	22년 9개월
국대운	1985	책임(차장)	2개	1,861억원	-3.97%	0.59%			4년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이채원	- 중앙대 국제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국대운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14.12	최초 신고
2015.06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6.05	종류 C-Pe 신설
2016.07	위험등급 분류체계 변경 반영
2017.04	종류 A-G, C-G 신설
2017.1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8.10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환매수수료 폐지
2019.08	종류 C-W 가입자격요건 변경
2020.0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채권혼합형, 단위: %)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채원	1964	책임(대표이사)	28	30,690	3.69	-0.52	3.69	-0.52	23년9개월
국대운	1985	책임(차장)	3	1,680	7.62	1.05			6년
김운실	1982	책임(차장)	2	619	-	-			6년 10개월

	- 동원투신운용(1996~2000) - 한국투자증권(2000~2006)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06~현재)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10~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공모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3년내 변경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김동영, 장동원	2014.12.24~2015.06.29
김동영, 이승혁	2015.06.30~2017.11.29
이채원, 국대운	2017.11.30~현재

② 부책임운용전문인력: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이채원	- 중앙대 국제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동원투신운용(1996~2000) - 한국투자증권(2000~2006)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06~현재)
국대운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10~현재)
김운실	- 카이스트 응용수학 석사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11~2016) - 한국투자금융지주(2017~2018)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018~현재)

[운용전문인력이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이채원 - 1개, 441억원 / 국대운, 김운실 - 없음]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수와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공모·사모펀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나. 최근3년 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운용기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운용전문인력
2015.06.30~2017.11.29	김동영, 이승혁	이채원, 국대운
2017.11.30~2018.10.30	이채원, 국대운	이승혁
2018.10.31~2020.01.20	이채원, 국대운	-
2020.01.21~현재	이채원, 국대운, 김운실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위험등급 분류 기준표]

(생략)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2018년 12월 23일) 기준 직전 3년간의 주간 수익률 변동을 측정한 연환산 표준편차가 3.45%로 산출되어 6단계의 위험등급 중5등급(낮은 위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투자를 통한 실세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면서 낮은 수준의 수익률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실질투자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현물보유투자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구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집합투자업자보수	0.3800	최초 보수 계산일로부터 매 3개월
		판매회사보수	0.5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80	
		총 보수	**0.9180**	**-**
		기타비용	0.0081	사유 발생시
		총보수 · 비용	**0.9261**	**-**
		(동종유형 총 보수)	0.9100	-
		총보수 · 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0.9261**	-
		증권거래비용	0.2018	사유 발생시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집합투자업자보수	0.3800	최초 보수 계산일로부터 매 3개월
		판매회사보수	0.2500	
		신탁업자보수	0.0200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위험등급 분류 기준표]

(현행과 같음)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2019년 12월 23일) 기준 직전 3년간의 주간 수익률 변동을 측정한 연환산 표준편차가 3.47%로 산출되어 6단계의 위험등급 중5등급(낮은 위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투자를 통한 실세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면서 낮은 수준의 수익률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삭제)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구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집합투자업자보수	0.3800	최초 보수 계산일로부터 매 3개월
		판매회사보수	0.5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80	
		총 보수	**0.9180**	**-**
		기타비용	0.0085	사유 발생시
		총보수 · 비용	**0.9265**	**-**
		(동종유형 총 보수)	0.9000	-
		총보수 · 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0.9265**	-
		증권거래비용	0.1767	사유 발생시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집합투자업자보수	0.3800	최초 보수 계산일로부터 매 3개월
		판매회사보수	0.25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8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80	
			총 보수	**0.6680**	**-**			**총 보수**	**0.6680**	**-**
			기타비용	0.0078	사유 발생시			기타비용	0.0081	사유 발생시
			총보수 · 비용	**0.6758**	**-**			**총보수 · 비용**	**0.6761**	**-**
			(동종유형 총 보수)	0.6700	-			(동종유형 총 보수)	0.6600	-
			총보수 · 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0.6758**	-			**총보수 · 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0.6761**	-
			증권거래비용	0.2009	사유 발생시			증권거래비용	0.1767	사유 발생시
	A-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집합투자업자보수	0.3800	최초 보수 계산일로부터 매 3개월		A-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집합투자업자보수	0.3800	최초 보수 계산일로부터 매 3개월
			판매회사보수	0.3500					판매회사보수	0.3500	
			신탁업자보수	0.02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8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80	
			총 보수	**0.7680**	**-**				**총 보수**	**0.7680**	**-**
			기타비용	-	사유 발생시				기타비용	-	사유 발생시
			총보수 · 비용	**0.7680**	**-**				**총보수 · 비용**	**0.7680**	**-**
			(동종유형 총 보수)	-	-				(동종유형 총 보수)	-	-
			총보수 · 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0.7680**	-				**총보수 · 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0.7680**	-
			증권거래비용	-	사유 발생시				증권거래비용	-	사유 발생시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집합투자업자보수	0.3800	최초 보수 계산일로부터 매 3개월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집합투자업자보수	0.3800	최초 보수 계산일로부터 매 3개월
			판매회사보수	0.9000					판매회사보수	0.9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8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80	
			총 보수	**1.3180**	**-**				**총 보수**	**1.3180**	**-**
			기타비용	0.0082	사유 발생시				기타비용	0.0085	사유 발생시
			총보수 · 비용	**1.3262**	**-**				**총보수 · 비용**	**1.3265**	**-**
			(동종유형 총 보수)	1.1900	-				(동종유형 총 보수)	1.1800	-
			총보수 · 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3262**	-				**총보수 · 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3265**	-
			증권거래비용	0.2021	사유 발생시				증권거래비용	0.1750	사유 발생시
	C-	수수료미징	집합투자업자보수	0.3800	최초 보수 계산일로부터 매		C-	수수료미징	집합투자업자보수	0.3800	최초 보수 계산일로부터 매

	E	구 온라인	판매회사보수	0.4500	3개월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80	
			총 보수	**0.8680**	**-**
			기타비용	0.0079	사유 발생시
			총보수 · 비용	**0.8759**	**-**
			(동종유형 총 보수)	0.7300	-
			총보수 · 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0.8759**	-
			증권거래비용	0.2004	사유 발생시
	C-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집합투자업자보수	0.3800	최초 보수 계산일로부터 매 3개월
			판매회사보수	0.6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80	
			총 보수	**1.0180**	**-**
			기타비용	-	사유 발생시
			총보수 · 비용	**1.0180**	**-**
			(동종유형 총 보수)	-	-
			총보수 · 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180**	-
			증권거래비용	-	사유 발생시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	집합투자업자보수	0.3800	최초 보수 계산일로부터 매 3개월
			판매회사보수	0.03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80	
			총 보수	**0.4480**	**-**
			기타비용	-	사유 발생시
			총보수 · 비용	**0.4480**	**-**
			(동종유형 총 보수)	-	-
			총보수 · 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0.4480**	-

	E	구 온라인	판매회사보수	0.4500	3개월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80	
			총 보수	**0.8680**	**-**
			기타비용	0.0081	사유 발생시
			총보수 · 비용	0.8761	**-**
			(동종유형 총 보수)	0.7100	-
			총보수 · 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0.8761**	-
			증권거래비용	0.1770	사유 발생시
	C-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집합투자업자보수	0.3800	최초 보수 계산일로부터 매 3개월
			판매회사보수	0.6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80	
			총 보수	**1.0180**	**-**
			기타비용	-	사유 발생시
			총보수 · 비용	**1.0180**	**-**
			(동종유형 총 보수)	-	-
			총보수 · 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180**	-
			증권거래비용	-	사유 발생시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	집합투자업자보수	0.3800	최초 보수 계산일로부터 매 3개월
			판매회사보수	0.03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80	
			총 보수	**0.4480**	**-**
			기타비용	-	사유 발생시
			총보수 · 비용	**0.4480**	**-**
			(동종유형 총 보수)	-	-
			총보수 · 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0.4480**	-

		증권거래비용		사유 발생시
C-I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	집합투자업자보수	0.3800	최초 보수 계산일로부터 매 3개월
		판매회사보수	0.05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80	
		총 보수	**0.4680**	**-**
		기타비용	0.0081	사유 발생시
		총보수 · 비용	**0.4761**	**-**
		(동종유형 총 보수)	-	-
		총보수 · 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0.4761**	-
		증권거래비용	0.2027	사유 발생시
C-P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집합투자업자보수	0.3800	최초 보수 계산일로부터 매 3개월
		판매회사보수	0.8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80	
		총 보수	**1.2180**	**-**
		기타비용	0.0082	사유 발생시
		총보수 · 비용	**1.2262**	**-**
		(동종유형 총 보수)	-	-
		총보수 · 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262**	-
		증권거래비용	0.2033	사유 발생시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	집합투자업자보수	0.3800	최초 보수 계산일로부터 매 3개월
		판매회사보수	0.0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80	
		총 보수	**0.4180**	**-**
		기타비용	0.0081	사유 발생시
		총보수 · 비용	**0.4261**	**-**
		(동종유형 총 보수)	-	-
		총보수 · 비용	**0.4261**	-

		증권거래비용		사유 발생시
C-I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	집합투자업자보수	0.3800	최초 보수 계산일로부터 매 3개월
		판매회사보수	0.05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80	
		총 보수	**0.4680**	**-**
		기타비용	0.0081	사유 발생시
		총보수 · 비용	**0.4761**	**-**
		(동종유형 총 보수)	-	-
		총보수 · 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0.4761**	-
		증권거래비용	0.2027	사유 발생시
C-P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집합투자업자보수	0.3800	최초 보수 계산일로부터 매 3개월
		판매회사보수	0.8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80	
		총 보수	**1.2180**	**-**
		기타비용	0.0085	사유 발생시
		총보수 · 비용	**1.2265**	**-**
		(동종유형 총 보수)	1.1800	-
		총보수 · 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265**	-
		증권거래비용	0.1738	사유 발생시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	집합투자업자보수	0.3800	최초 보수 계산일로부터 매 3개월
		판매회사보수	0.0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80	
		총 보수	**0.4180**	**-**
		기타비용	0.0084	사유 발생시
		총보수 · 비용	**0.4264**	**-**
		(동종유형 총 보수)	-	-
		총보수 · 비용	**0.4264**	-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증권거래비용	0.2027	사유 발생시
S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집합투자업자보수	0.3800	최초 보수 계산일로부터 매 3개월
		판매회사보수	0.25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80	
		총 보수	**0.6680**	**-**
		기타비용	0.0057	사유 발생시
		총보수 · 비용	**0.6737**	**-**
		(동종유형 총 보수)	-	-
		총보수 · 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0.6737**	-
		증권거래비용	0.2031	사유 발생시
C-P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집합투자업자보수	0.3800	최초 보수 계산일로부터 매 3개월
		판매회사보수	0.4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80	
		총 보수	**0.8180**	**-**
		기타비용	0.0077	사유 발생시
		총보수 · 비용	**0.8257**	**-**
		(동종유형 총 보수)	-	-
		총보수 · 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0.8257**	-
		증권거래비용	0.2044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년도: 2017.12.24~2018.12.23]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년도: 2017.12.24~2018.12.23]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증권거래비용	0.2158	사유 발생시
S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집합투자업자보수	0.3800	최초 보수 계산일로부터 매 3개월
		판매회사보수	0.25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80	
		총 보수	**0.6680**	**-**
		기타비용	0.0060	사유 발생시
		총보수 · 비용	**0.6740**	**-**
		(동종유형 총 보수)	-	-
		총보수 · 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0.6740**	-
		증권거래비용	0.1776	사유 발생시
C-P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집합투자업자보수	0.3800	최초 보수 계산일로부터 매 3개월
		판매회사보수	0.4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80	
		총 보수	**0.8180**	**-**
		기타비용	0.0081	사유 발생시
		총보수 · 비용	**0.8261**	**-**
		(동종유형 총 보수)	1.1800	-
		총보수 · 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0.8261**	-
		증권거래비용	0.1742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년도: 2018.12.24~2019.12.23]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년도: 2018.12.24~2019.12.23]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상기 펀드의 동종유형 총보수 기준일은 2019/01/31 입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구분			투자기간				
			1 년후	2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종류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4	242	344	560	1,18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44	242	344	560	1,182
종류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4	166	241	401	86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4	166	241	401	865
종류 A-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3	195	280	461	98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3	195	280	461	983
종류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6	277	423	731	1,60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36	277	423	731	1,605
종류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0	183	281	487	1,08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0	183	281	487	1,083
종류 C-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4	213	326	565	1,25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4	213	326	565	1,250
종류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6	94	144	251	56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46	94	144	251	565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구분			투자기간				
			1 년후	2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종류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4	242	344	560	1,18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44	242	344	560	1,182
종류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4	166	241	401	86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4	166	241	401	865
종류 A-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3	195	280	461	98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3	195	280	461	983
종류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6	277	423	731	1,60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36	277	423	731	1,605
종류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0	183	281	487	1,08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0	183	281	487	1,083
종류 C-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4	213	326	565	1,25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4	213	326	565	1,250
종류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기관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6	94	144	251	56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46	94	144	251	565

		보수 포함)					
종류 C-I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9	100	153	267	60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49	100	153	267	600
종류 C-P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6	256	391	677	1,49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6	256	391	677	1,491
종류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4	89	137	239	53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44	89	137	239	538
종류 S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9	141	216	376	84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69	141	216	376	841
종류 C-P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5	173	265	460	1,02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5	173	265	460	1,023

주)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 포함)					
종류 C-I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9	100	153	267	60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49	100	153	267	600
종류 C-P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6	256	391	677	1,49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6	256	391	677	1,491
종류 C-W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4	89	137	239	53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44	89	137	239	539
종류 S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9	141	216	377	84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69	141	216	377	841
종류 C-P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5	173	265	460	1,02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5	173	265	460	1,024

주)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4기(2017.12.24 - 2018.12.23)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3기(2016.12.24 - 2017.12.23)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2기(2015.12.24 - 2016.12.23)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4기(2017.12.24 - 2018.12.23) 기준 작성

1. 재무정보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5기(2018.12.24 - 2019.12.23)	삼화회계법인	적정
제 4기(2017.12.24 - 2018.12.23)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3기(2016.12.24 - 2017.12.23)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5기(2018.12.24 - 2019.12.23) 기준 작성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제 4기(2017.12.24 - 2018.12.23) 기준 작성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2018.12.25 기준 작성(운용실적)
2018.12.23 기준 작성(자산구성현황)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자본금	100억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18.12.31**	**2017.12.31**	**계정과목**	**'18.01.01 ~'18.12.31**	**'17.01.01 ~'17.12.31**
현금및예치금	30,507	29,198	영업수익	19,769	24,198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188	0	영업비용	10,685	9,704
기타포괄손익 인식금융자산	1,419	1,519	**영업이익**	9,084	14,494
유형자산	460	208	영업외수익	26	1
무형자산	325	613	영업외비용	92	170
이연법인세자산	634	25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9,017	14,325
기타자산	1,285	5,515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2,244	3,385
자산총계	**34,818**	**37,310**	**계속사업이익**	6,773	10,940
기타부채	2,811	2,153	**당기순이익**	6,773	10,940
부채총계	**2,811**	**2,153**			
자본금	10,000	10,0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3	0			
이익잉여금	22,079	25,157			
자본총계	**32,007**	**35,157**			
부채와자본총계	**34,818**	**37,310**			

라. 운용자산 규모 (2018.12.25 현재/ 단위: 억원)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제 5기(2018.12.24 - 2019.12.23) 기준 작성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2020.01.02 기준 작성(운용실적)
2019.12.23 기준 작성(자산구성현황)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자본금	124.2억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19.12.31**	**2018.12.31**	**계정과목**	**'19.01.01 ~'19.12.31**	**'18.01.01 ~'18.12.31**
현금및예치금	11,906	30,507	영업수익	17,644	19,769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401	188	영업비용	9,497	10,685
기타포괄손익 인식금융자산	1,419	1,419	**영업이익**	8,147	9,084
유형자산	1,662	460	영업외수익	116	26
무형자산	285	325	영업외비용	1,052	92
이연법인세자산	593	48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212	9,017
기타자산	1,060	1,285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1,866	2,244
자산총계	**518,311**	**34,669**	**계속사업이익**	5,346	6,773
기타부채	3,121	2,811	**당기순이익**	5,346	6,773
부채총계	**3,121**	**2,811**			
자본금	12,420	10,0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3	-73			
이익잉여금	21,277	21,931			
자본총계	**515,189**	**31,858**			
부채와자본총계	**518,311**	**34,669**			

라. 운용자산 규모 (2020.01.02 현재/ 단위: 억원)

<table>
<tr>
<td></td>
<td>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증 권</th><th rowspan="2">부동산</th><th rowspan="2">특별자산</th><th rowspan="2">혼합자산</th><th rowspan="2">MMF</th><th rowspan="2">총 계</th></tr>
<tr><th>주식형</th><th>채권형</th><th>혼합형</th></tr>
<tr><td>수탁고</td><td>21,502</td><td>603</td><td>12,613</td><td>0</td><td>0</td><td>0</td><td>0</td><td>34,718</td></tr>
</table>
</td>
<td>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증 권</th><th rowspan="2">부동산</th><th rowspan="2">특별자산</th><th rowspan="2">혼합자산</th><th rowspan="2">MMF</th><th rowspan="2">총 계</th></tr>
<tr><th>주식형</th><th>채권형</th><th>혼합형</th></tr>
<tr><td>수탁고</td><td>19,970</td><td>619</td><td>11,367</td><td>0</td><td>0</td><td>928</td><td>0</td><td>32,884</td></tr>
</table>
</td>
</tr>
<tr>
<td rowspan="2">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td>
<td>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4) 반대매수청구권
2. (생략)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td>
<td>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4) 반대매수청구권
2. (현행과 같음)
- (삭제)
</td>
</tr>
<tr>
<td>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기준일: 2018.12.25 단위: 백만 원)
<table>
<tr><th colspan="2">이해관계인</th><th rowspan="2">거래의 종류</th><th rowspan="2">자산의 종류</th><th rowspan="2">거래 금액</th></tr>
<tr><th>성명(상호)</th><th>관 계</th></tr>
<tr><td>한국투자증권</td><td>최대주주</td><td>위탁거래</td><td>주식</td><td>72,723</td></tr>
</table>
주) 거래 금액은 작성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간 금액입니다.
</td>
<td>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기준일: 2020.01.02 /단위: 백만 원)
<table>
<tr><th colspan="2">이해관계인</th><th rowspan="2">거래의 종류</th><th rowspan="2">자산의 종류</th><th rowspan="2">거래 금액</th></tr>
<tr><th>성명(상호)</th><th>관 계</th></tr>
<tr><td>한국투자증권</td><td>최대주주</td><td>위탁거래</td><td>주식</td><td>35,455</td></tr>
<tr><td>한국투자증권</td><td>최대주주</td><td>위탁거래</td><td>채권</td><td>3,000</td></tr>
</table>
주) 거래 금액은 작성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간 금액입니다.
</td>
</tr>
</table>

2) 신탁계약서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②(생략)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생략) 8. 종류 C-I 수익증권 : 최초 납입금액이 20 억원 이상인 투자자 9~12.(생략) ④(생략)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현행과 같음) 8. 종류 C-I 수익증권 : 최초 납입금액이 20 억원 이상인 투자자(「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9~12.(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12.(생략)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생략)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1~12.(현행과 같음)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삭제, 2020.01.21) ④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현행과 같음)
	제11조(예탁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삭제, 2020.01.21)

	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삭제, 2020.01.21)**
	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생략)	**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현행과 같음)
	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④(생략) 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제14조(수익자명부)** ①~④(현행과 같음) 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생략)	⑦ (삭제, 2020.01.21) ⑧(현행과 같음)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5. (생략) 6.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7~10. (생략) ②(생략)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5. (현행과 같음) 6.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7~10.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 26 조(수익증권의 환매) ①~③(생략) ④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 26 조(수익증권의 환매)** ①~③(현행과 같음) ④(삭제, 2020.01.21) ⑤(삭제, 2020.01.21) ⑥(삭제, 2020.01.21)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 조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 3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 시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④(생략)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 3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 시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④(현행과 같음)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③(생략) ④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③(현행과 같음) ④(삭제, 2020.01.21)
	제48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생략)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48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현행과 같음)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